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	-----

제출연월일 : 2005. 3. 17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 기구의 폐지, 여유기구제의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 설치 등 직제개편과 주택가격평가, 일제강점동원 관련 및 수질오염 총량제 등 신설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 보장을 위하여 우리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원의 총수 691명을 70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76명을 692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직급별(일반직) 증원안 : 총 16명

- 5급 : 39명 ⇒ 40명 ▷ 증1명
- 7급 : 169명 ⇒ 174명 ▷ 증5명
- 8급 : 180명 ⇒ 188명 ▷ 증8명
- 9급 : 78명 ⇒ 80명 ▷ 증2명

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별표를 신설함(안 제3조)

다.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일제강점동원 관련 증원되는 구분청의 정원중 일반직 8급 1명에 대한 존속 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필요

▷ 불임 인건비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관련지침

-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83, 2004.12.18)
-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7, 2005.1.24)
-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정원승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642, 2005.2.28)
-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정원승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643, 2005.2.28)
- 입법예고 : 2005. 2. 25 ~ 3. 21 ▷ 제출의견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91명”을 “70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676명”을 “692명”으로 한다.

제3조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구분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일제강점동원 관련 증원되는 구분청의 정원중 일반직 8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 계	구분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707	481	15	44	20	147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99	405	9	35	9	141
3급	1	1				
4급	5	3	1	1		
5급	40	17	2	4	1	16
6급	111	84	2	6	3	16
7급	174	126	3	12	2	31
8급	188	131	1	12	1	43
9급	80	43			2	35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1			1		
기능직 계	106	75	6	8	11	6
6급	3	2		1		
7급	6	5			1	
8급	15	14			1	
9급	32	19	5	3	5	
10급	50	35	1	4	4	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91명</u>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 기관의 정원 : <u>676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u>707명</u>-----.</p> <p>1. ----- : <u>692명</u></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u><신 설></u></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 -- ----- ----- <u>별표와</u> <u>같다.</u></p>
<p><u><신 설></u></p>	<p>제4조(정원관리기관별 · 직렬별 정원) 구 <u>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u> <u>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u> <u>원은 규칙으로 정한다.</u></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707	481	15	44	20	147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99	405	9	35	9	141
3급	1	1				
4급	5	3	1	1		
5급	40	17	2	4	1	16
6급	111	84	2	6	3	16
7급	174	126	3	12	2	31
8급	188	131	1	12	1	43
9급	80	43			2	35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1			1		
가능직 계	106	75	6	8	11	6
가능6급	3	2		1		
가능7급	6	5			1	
가능8급	15	14			1	
가능9급	32	19	5	3	5	
가능10급	50	35	1	4	4	6